

#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

## - 「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」 항목 -

### □ 자율점검제 개요

- (개념)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
- (관련근거)
 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[별표5] 제4호
  - 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(고시 제2022-315, 2022.12.30.시행)
  -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 (고시 제 2022-198, 2022.8.25.시행) 등

### □ 항목 선정 배경

- 최근 3년간 항생제 주사제 청구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며, 구입·청구 차액 발생기관(15,644개소)이 전체 청구기관의 약 51.2%로 확인되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 대한 청구행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자율점검 필요

#### 관련근거

- 「의료법」 제22조 (진료기록부 등)
  -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[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, 추가 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, 이하 같다]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(약제·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)  
법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·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  1. 한약제: 상한금액
  2. 한약제 외의 약제 : 구입금액
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(요양급여대상의 고시)
  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,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,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한다.
- 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(제5조제1항 관련)
- 1. 요양급여의 일반원칙**
- 바.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**약제·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**하여야 한다.

## □ 자율점검 운영 방법 및 절차

- (운영기간) '25.6월 ~
- (대상기간) '22.1월 ~ '24.12월(36개월)
- (제출기한)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,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
- (점검사항)
  - '항생제(주사제)'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·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
  - 제출 자료의 위·변조 여부,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
  -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·외부 전문가에게 자문
- (방법 및 절차) 우리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**[별첨2]**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
  -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
  - 단,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·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

## □ 관련단체 협조 요청사항

- 자율점검제 운영 목적, 신고 방법·절차, 성실 신고의 필요성 등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 [별첨 1]
  - 통보받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참여(자진신고)할 수 있도록 방법·절차 안내
  - 자진신고 시 [별첨 3]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로 제출



**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**

- 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**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**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25.4.15., 시행 2025.4.23.)」 및 「**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**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5호, 시행 2022.12.30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항생제(주사)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약제와 실제 투여한 약제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 )년 ( )월부터 ( )년 ( )월 진료분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※ 자진신고 관련 안내**

**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(36개월)이외 기간이나,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 신고가 가능**하며,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면제됩니다.

다만,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(언론보도, 수사,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)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1) 자율점검 방법

#### - [점검사항]

- ① 항생제(주사)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약제와 실제 투여한 약제의 동일성 여부

#### [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- ② 36개월: 착오청구 확인 시 2022.1.~2024.12.(36개월)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

#### - [제출기한]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#### 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 - 항생제(주사) 의약품 거래원장 및 거래명세서
  -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등
  - 자율점검결과서

※ 거래원장 스캔본과 거래명세서 엑셀파일을 요양기관 업무포털 또는 이메일로 제출
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#### - [제출방법] 요양기관업무포털, 동기우편 등을 활용하여 접수

- \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시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필요
- \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#### 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문연미 팀장 (☎ 033-739-5906)	최연수 과장 (☎ 033-739-5932)
안은정 과장 (☎ 033-739-5935)	정다운 과장 (☎ 033-739-5916)
우미경 과장 (☎ 033-739-5946)	조운정 과장 (☎ 033-739-5933)
김영림 과장 (☎ 033-739-5912)	정혜수 과장 (☎ 033-739-5925)

### 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

자 율 점 검 결 과 서

① ○ 요양(의료급여)기관 명칭(기호):

② ○ 소재지: (TEL : )

③ ○ 대표자 성명:

○ 면허번호:

○ 점검 결과

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( ④ 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 )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.

⑤

1. 대상기간: 년 월 ~ 년 월 ( 개월)

2. 점검 결과:  정당  착오 청구

3. 자율점검 사항(착오청구 유형 중심 기재)

4. 착오유형 (중복체크 가능)

착오청구 유형		확인
A	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청구	<input type="checkbox"/>
B	실제 투여한 약제와 다른 약제 대체 청구	<input type="checkbox"/>
C	기타 착오	<input type="checkbox"/>
	유형:	

5. 위 사실을 바탕으로 착오청구 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[ 동의 ]합니다.

⑥ 년 월 일

⑦ 대표자(개설자) (인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⑧ 제출 서류

-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
-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



**별첨3**

**자진신고서 서식**

**자진신고서**

접수번호:		접수일자:				
※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						
신고인	요양기관기호(명칭)					
	요양기관 소재지					
	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		
	E-MAIL					
	휴대폰 번호	정보알림 받기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
아래 부당청구 자진신고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√ 표를 합니다.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 신고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 확인 전 신고한 내용임 <input type="checkbox"/> 민원제보, 언론보도,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신고 내용이 아님						
신고대상 요양급여비용 항목(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)						
기본진료료	검사료	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	투약 및 조제료	주사료	마취료	이학요법료
정신요법료	처치 및 수술료 등	약제비	입원환자 식대	보철료	응급의료 수가	기타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70조제1항 [별표5]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'4. 감면처분'에 따라 위의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 <p>○ 부당청구 내용:</p> <p>○ 신고 대상기간:</p> </div>						
불임: 자진신고 세부내역 1부. 끝.						
			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 신고인	일 (인)		
<b>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</b>				<b>귀하</b>		

<작성방법>

※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## 자진신고 세부내역

▶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①접수 년도	②접수 번호	③청구서 일련번호	④명세서 일련번호	⑤보험자 구분	수진자명	생년월일	⑥요양개시일자	⑦기존청구		⑧자진신고		⑨비 고
									청구코드	청구용량	실제코드	청구용량	

### 작성 방법

※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작성 등 가능합니다.

※ 기재내용

- ① 접수년도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년도
- ② 접수번호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 시 부여된 번호
- ③ 청구서일련번호: 전산부 인계일자에 따라 생성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번호
- ④ 명세서일련번호: 수진자별 작성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번호(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통합,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)
- ⑤ 보험자구분: 건강보험, 의료급여
- ⑥ 요양개시일자: 진료를 위해 최초 내원한 일자
- ⑦ 기존청구: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 내역(청구코드 및 청구용량)자율점검: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내역
- ⑧ 자진신고: 실제 사용한 약제의 청구코드(동일한 약제이면 기재 생략)와 실제 사용 용량을 기재
- ⑨ 비고 : 착오청구 유형 기재 **【A: 의약품 용량 착오청구, B: 실제 투여한 약제와 다른 약제 대체 청구, C:기타(사유기재)】**